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652
----------	-------

발의연월일 : 2026. 4. 28.

발 의 자 : 이달희 · 서천호 · 김예지  
고동진 · 김상훈 · 최보운  
강대식 · 임종득 · 조배숙  
서일준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세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비율은 2006년 이후 20년간 개정되지 않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으로 많이 이양된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충분한 재정 확보를 위한 지방교부세 재원 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임.

이에 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1만분의 2,924까지 상향하여 안정적인 지방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1호).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총액의 1만분의 1,924에”를 “총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내국세 반영비율을 곱한 금액에”로 하고, 같은 호에 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연도	내국세 반영비율
2027년도	1만분의 2,124
2028년도	1만분의 2,324
2029년도	1만분의 2,524
2030년도	1만분의 2,724
2031년도 이후	1만분의 2,924

##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